예 산 총 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13,148,683	21,394,460
일반회계	693,021,203	20,790,636
특별회계	20,127,480	603,824
공기업특별회계	18,362,331	550,870
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	18,362,331	550,870
기타특별회계	1,765,149	52,95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37,949	31,13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27,200	21,81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